

# 한국↔극지과학기지 간 화물 발송 안내문

## 1. 지역별 운송기간

- (1). 칠레(세종기지) : 7 ~ 10일
- (2). 장보고(뉴질랜드, 호주) : 5 ~ 7일
- (3). 다산(노르웨이) : 10 ~ 12일

\* 각 기지별 운송기간은 환적항공편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감안해서 발송 필요

## 2. 기지 입출항공 및 해상운송 일정 확인

\* 기지반입이 아닌 경우 일정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3. 화물종류

- (1). 일반화물
- (2). 위험물(액체류, 배터리 등) :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MSDS” 준비
  - \*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약자로 물품에 대한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운송상 주의사항),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는 자료
- (3). 수출/입 처리 후 관리대상 물품(재수출대상 화물, 사후관리물품 등)
  - \* 세금 감면 관련 물품을 주요 품목으로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된 화물 및 세금을 감면 받아 구매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물품 수출 신고 등을 중점사항으로 처리함

## 4. 발송 서류 작성

- (1). Invoice, Packing List : 품명, 모델명, SN, 수량(단위), 단가, 외부포장 규격(CBM) 등 정보
- (2). MSDS(필요시) :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에 대해 제조사를 통한 MSDS 제출
- (3). 사유서(필요시) : 용도확인 및 수출/입시 사유서 제출이 요청되는 품목에 대한 사유서

## 5. 화물 포장

- (1). 운송 중 충격 대비 포장 : 진동 및 낙하(상/하차), 눌림(중량물적재) 등에 대비한 고정 및 포장
- (2). 위험물 분류 화물 특수 포장 :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 중 운송업체(항공사/해운사)가 위험물 포장(별도 포장 및 검사)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화물에 대한 포장
- (3). 외부표시 : 포장단위 전체 중량, 화물구분표시(ex: ABC #1/1)

## 6. 발송비용 정산

- (1). 극지연구소 - 연구비 계정 중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133)으로 비용 처리
- (2). 외부기관 - 극지연구소에서 선지급한 정산금액을 통보 후 해당 금액 입금
- (3). 국내발생 예상경비
  - \* 칠레(세종) : 45kg기준 55만원
  - \* 뉴질랜드(장보고) : 45kg 기준 38만원
  - \* 노르웨이(다산) : 30kg 기준 120만원

## 7. 화물 도착 확인 (현지 대행사 수령)

## 기타 1. 위험물 분류

- ① 화물운송에서의 위험물이란 운송과정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인 위험물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 ②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은 운송방법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별도의 포장 및 검사과정을 거친 후, 운송사(해운사, 항공사)의 운송지시에 따라야 한다.
  - ※ 별도 운송공간 및 별도 운송용기(컨테이너) 사용 등
- ③ 화물의 위험물 구분 (IMDG CODE 참조)

분류	내용	분류	내용	분류	내용
제1급 (Class 1)	화약류	제4급 (Class 4)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물반응성물질	제7급 (Class 7)	방사성물질
제2급 (Class 2)	가스류	제5급 (Class 5)	산화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제8급 (Class 8)	부식성물질
제3급 (Class 3)	인화성 액체류	제6급 (Class 6)	독성물질 전염성물질	제9급 (Class 9)	기타 위험물질 및 제품

-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은 MSDS(또는 물질의 성분확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⑤ 리튬배터리에 대해서 2016년 4월 1일부터 IM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2016.03.25. /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보도자료 참고)
  - ※ 화물전용기인 경우에도 충전률 30%이하로 제한함
  - ※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리튬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거나 보조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된다.

리튬배터리 용량 규격	부치는 짐	휴대
장비에 부착한 160Wh 이하	허용	허용
장비에 부착한 160Wh초과	금지	금지
보조 배터리 (100Wh 이하)	금지	허용
보조 배터리 (100Wh초과 ~ 160Wh 이하) * 1인당 2개 이내	금지	허용
보조 배터리(160Wh 초과)	금지	금지

※ 예시: **용량이 1,000mAh이고, 전압이 5V인 배터리의 환산 = (1,000mAh \* 5V) / 1,000 = 5Wh**

## 기타 2. 화물 포장

- ① 남/북극과목기지로 발송하는 화물의 경우 기지반입 운송편이 제한적이므로 화물 규격에 따라 운송이 불가할 수 있으니 **카톤박스(950 × 600 × 550)규격 이하로 포장**(권장사항)되어야 한다.
  - ※ **화물을 포함한 포장박스의 무게는 80kg미만**(권장사항)으로 제한한다.
- ② 위험물 등 특수포장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 포장을 실시한다.
  - ※ 위험물포장이 필요한 화물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포장 및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 ③ 운송과정 중 **진동 및 낙하, 중량물에 의한 눌림** 등에 대비한 포장을 해야 함

### 기타 3. 수출입 처리 구분

※ 수입신고시 관세가 발생되므로 감면대상 화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필요

※ 재수출조건수입 불이행시 가산세(관세의 20%)가 발생하니 수출신고시 주의 필요

① 일반수출 : 국내로 재수입하지 않는 화물을 수출처리함

② 재반입조건수출 : 국내로 재수입예정으로 신고하는 화물을 수출처리 함

③ 일반수입 : 화물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고 외국에서 수입처리 함

④ 재수입 : 수출신고를 근거로 수입예정 화물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아 수입 함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참조

⑤ **재수출조건수입** : 수출국으로 재수출예정으로 신고하고 일정기간 내 수출하는 화물을 수입 함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참조

※ 재수출조건부수입품의 물품(장비)담당자는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기한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필증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수출신고가 되어야 함.

# 재수출조건부수입 확인서

담당부서	0000연구센터	담당자	0 0 0	연구책임자	0 0 0
수입신고일	2016.00.00		수출신고기한	2016.00.00	
운송업체	000 운송		신고자 (처리관세사)	000 관세사	
재수출 대상국가(기지)			남극세종과학기지		
제출번호	00000-00-000000A		신고번호	000-00-00-00000000	
품명	수량	단위	단가 (USD)	금액 (USD)	비고
0000	1	EA	1,000	1,000	
0000	2	SET	500	1,000	
0000	1	EA	100	100	
0000	2	Pkg	200	400	
0000	1	EA	300	300	
0000	1	EA	100	100	
...					
<p>1. 상기 물품에 대해 <b>재수출조건부 수입</b>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수출신고기한 내 수출처리 하겠습니다.</p> <p>2. 재수출신고(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조건에 미달되거나 기간 내 재수출처리 못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 및 가산세(관세의 20%)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받았습니니다.</p> <p>3. 재수출미이행에 따른 패널티(행정조치 및 세액 징수)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함을 확인합니다.</p>					
2016. 00. 00					
확인자				(서명)	